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0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6일

발 의 자 : 김선갑·박기열·김인제
김미경·이상묵·김동욱
김기대·송재형·문형주
장우윤·박마루·우미경
의원(12명)

1. 제안이유

의회 사무처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 등에 대한 계약 업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에 있어 일반입찰을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긴급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약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안 제5조).
- 다.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 등에 대한 계약업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처가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 등 계약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회는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에 있어 계약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절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의회가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③ 의회는 공사·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의 구매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업체 유리 또는 불리한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반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장
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담당 국장
- ④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업무의 담당관이 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자와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수당)
 - 계약제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시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총 소요예산 : 18,000천원

(단위 : 천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8,000	3,600	3,600	3,600	3,600	3,600

- 조례(안)에서는 계약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 산출이 곤란하나, 위원회 회의 개최 통상의 예(연4회)를 들어 비용을 산출함
 - 위원회 위원구성 : 9인 이내(위원장 1, 위원 8)
- 비용발생 대상 : 5명(공무원이 아닌 위원)
 -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5명 이상
- 산출금액 : 3,600천원
 - 수당 : 150,000원 × 5명 × 4회 = 3,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30,000원 × 5명 × 4회 = 600천원
-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p153)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p134)참조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2시간 이내), 초과 50,000원
 - 업무추진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p21)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1(음식물 가액범위 : 3만원)

4.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 책 조 사 팀 장 이 철 희
주 무 관 송 경 수

☎ 02-3705-1276, e-mail(kssong1@seoul.go.kr)